

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영길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을 제한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- 또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본 조례안 내용 중 별표 3 ‘바’항목이 누락되어 의결·공포된 바 이를 정정하고자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(안 제22조4항)
 - 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[별표1의2]제2호 가목(3)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, 높이,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음
- 별표3 제2호 바목 추가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6조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4. 1. 9. ~ 1. 15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, 제270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안에서 누락된 [별표3]의 ‘바’목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에 26개의 자원순환시설이 등록되는 등 관내 자원순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원순환 시설의 허가기준 마련으로 자원순환시설의 난립 방지를 통해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나,
- 다만, 별표28의 ‘사’항(도로 및 철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)의 500미터 기준은 향후 자원순환 시설의 도입이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기에 허가 기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